

재난보도와 인권

정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인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언론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일반 독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가는 다음의 한 사건이 참으로 잘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 년의 풀리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한 장의 사진은 전란의 와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와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서운 눈초리로 소녀를 노리고 있는 육식 독수리를 잡은 극적인 것이었다. 수단(Sudan)의 전란현장에서 남아공화국의 케빈 카터 기자가 찍어낸 사진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평시가 아닌 전란의 현장에 뛰어 들어 잡아 낸 사진일 뿐만 아니라 「죽어 가는 어린아이를 노리는 독수리」라는 흔치 않은 장면을 홀려버리지 않고 포착해 낸 사진으로 의식과 공이 많이 들어 간 사진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란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일반적인 참혹함과 전란을 통해 겪는 수단 국민들의 구체적인 고통을 풀리처라는 상을 통해 세계에 알림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전쟁을 혐오하게 하고 수 단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뜻있는 사진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이 풀리처상의 수상작으로 결정되고 이러한 내용이 세계에 알려지자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매우 거센 항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죽어 가는 소녀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곧 주검이 되어 독수리의 땅이 될 것이 분명한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 앞에서 태연히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보도 보다는 구조가 우선이고 수백만 일반 독자들의 알권리 보다는 현장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의 살 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요약해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1995 년 6 월 29 일 하오 6 시경 발생하여 501 명의 사망자를 포함 모두 1400 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 전란에 버금가는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제반 보도에 대해서도 독자와 시청자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모 하나 방독면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다 더 생생한 영상과 기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석면가루와 유독가스, 화마와 붕괴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출입 을 마다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시청자와 독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언론에 엄청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삼풍사건과 관련하여 개설된 천리안과 하이텔의 대화방에 올려진 수천건의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언론관련 불만이었던다는 점으로만 미루어보아도 이번의 삼풍보도와 관련된 일반 수용자들의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 하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언론관련 비평지들이나 비평면에 게재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의 항의성 언론 비판 역시

만만치 않아 언론은 불철주야 약 40 일의 집중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의 취재경쟁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 「구조를 방해한 언론의 취재경쟁은 언론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은 삼풍 경영진의 물신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장면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이나 사진이 많았다」 등 어느 곳 한 구석에도 이번의 언론취재에 감동을 받았던가 취재로 인해 크게 도움을 받았던가 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채 자사의 기자들을 죽음과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내몬 한국의 미디어 편집진은 이러한 의견에 별달리 찬성하지 않은 듯 했다. 반론의 핵심은 역시 국민의 알권리였다. 언론의 독자와 시청취자로 구체화되는 모든 국민은 정확한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삼풍사고와 같은 대재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보다 생생하게 그 참상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언론사는 이러한 국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언론은 많은 인력, 많은 지면을 아끼지 않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생각이다.

삼풍참사를 보도한 한국 언론사의 편집진이나 폴리처상을 심사하고 시상한 폴리처상 관계자의 생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보다 극적인 장면의 포착과 묘사에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의 기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기자가 해야 할, 할 수 있는 제반 행위 가운데 그 어떤 행위보다 튀는 화면, 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카터 기자의 사진을 본 독자나 삼풍참사의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은 한결 같이 최소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구조작업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기를 희망한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인명위기 상황, 특히 재난으로 명명되는 대형사고에서의 언론의 보도와 여기서 야기되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 글에서 재난을 포함하는 인명위기상황에서 언론이 무엇을 하려하고 수용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소 장황하리만큼 늘어 놓은 것은 지금부터 전개하고자 하는 재난시 언론보도와 인권침해의 문제에 이러한 논의가 매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독자와 시청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알권리를 포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알권리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가 국민인 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상 그의 수탁자로 설명되는 언론사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권리 운운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언론은 이 같은 인명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언론의 공익성이 조각될 경우, 이 상황에서 언론에 의해 범해지는 명예훼손,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총의 인격권의 문제는 전혀 구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언론사 편집 진영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막연히 언론 수용자들의 다수가 그러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판단해도 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은 삼풍참사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언론에서의 공익성 실현과 개인의 인권보호라는 자주 상충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정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고자 한다.

보도에서의 인권침해의 조각사유가 되는 공익성을 재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이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로 인한 언론보도의 특수성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재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번의 삼풍참사나 5,480명 (95년 3월 13일 현재)의 사망자와 86,000명의 이재민을 낸 일본의 고베대지진처럼 인명 살상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구조, 구난이 시급히 요구되는 재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언론의 보도가 평상의 사건이나 사고 보도 때와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언론보도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사고의 경우, 그것이 설혹 인명과 관련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의 독자 대중이나 청중이 되지 못하나 대형재판의 경우는 재해지역이외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또한 대중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피해지역 이외의 대중들에게 가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그들 나름의 특수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대중이 평상시와는 달리 새롭게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의 사고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제외한 그 밖의 많은 독자 시청자 대중은 이를 소비하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가 이미 있어 관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피해자가 정보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정보 소비자로서 등장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움직임(구조, 구호, 봉사, 보상, 안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3분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규모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피해의 범위가 그 사회에서 준비하고 상시구조체제에 의해 쉽게 통제가 되는 상황이나 인명 피해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한 대형재난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상시체제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상황발생이후 매우 짧은 시간내에 구조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상례 인데 반해 후자는 비상구조체제를 동원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구조작업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언론은 구조작업 전반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세히 지켜보게 되고 따라서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 구조나 구호활동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논제로 떠올라 언론의 주요 시간대와 지면을 메우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양질전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해야 할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재난에서의 언론의 보도는 소규모 사건에 대한 별도의 단순한 양적확장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평상의 조그마한 인명사고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태도와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건 자체의 성격에 의해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보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사회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건/사고의 보도 프레임과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담을 그릇과 담기는 내용물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내용물의 운반이 불가능해지거나 용기가 망가지거나 상태가 위태롭거나 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되는 경우이다. 이번 삼풍참사에서 일어난 많은 부작용과 불만도 역시 이러한 부적절한 보도프레임의 적용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경고성 측면에서 사고를 당한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전 국민에게 알리는 식의 사고보도 프레임으로 사고 현장에 급파된 나머지 당장 보도하는 기자들에겐 안전모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구조는 오랜 시간 지속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여기서 연출되는 위험한 상황에 보도진은 상당부분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의 안위를 의료진에게 맡기고 있는 희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든가 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일을 외부에 알려준다든가 하는 피해자 중심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에서는 부각되지 않는 구조의 현장에 있으면서 즉 목숨을 구하는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구조와는 무관한 또는 구조를 방해하는 일마저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자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재해를 입은 현장에서 언론이 구조가 아니라 보도를 하고 있어도 좋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의 보도활동이 또 하나의 구조활동이 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목을 때다. 물론 언론의 인명구조 활동은 인명구조반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펜과 카메라를 놓고 직접 사람을 구하려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진은 인명구조에 적절히 훈련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안되며 인명구조는 정말 훈련된 인명구조팀에 맡겨야 할 것이다. 언론의 인명구조활동은 바로 펜과 카메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렇게 펜과 카메라가 인명구조 작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에만 그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인명구조작업과는 관계없이 인명구조작업반의 뒤쪽에서 카메라와 펜을 들고 서있을 자격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반의 사고와는 성질이 다른 재난에는 사고보도 프레임이 아니라 재난보도 프레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재난보도 프레임의 핵심은 보도의 기본이 철저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재난보도 프레임의 설정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재난시 언론의 보도가 공익에 부합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근거나 기준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고보도의 프레임을 적용한 지금까지의 판단기준은 설혹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결과가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면 이를 조각하는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상황이고 재난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해현장을 비재해지역에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현장의 입장에 서서 재해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한다면 재해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각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내용이 자신에게 유익 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할 상황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라면 모를까 현실 속에서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난보도 프레임을 적용한다고 해서 피해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피해지역 이외에 전혀 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언론이 비피해지역으로부터 지원과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지역의 참상을 정제된 형태로 보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의 안부내용을 서로 교환해주기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비피해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히 사태를 선결 적으로 보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절제된 형태로 최소한의 보도를 한다는 원칙 하에서이다.

재난보도 프레임의 성격을 이렇게 정하고 만약 언론이 이러한 보도프레임으로 재난현장에 들어간다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선정적 표현 등의 위법사례는 사실상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피취재자와 피사체를 여기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현장감 있게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펜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보이기 싫은 모습, 홀로 조용히 안식하고 싶은 생각을 저버리고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재난보도 프레임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듯 보인다. 특히 재난시 그 속보성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방송에는 앞서 설명한 단순사고 보도와는 다른 재난보도 프레임이 상당부분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 NHK의 경우,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의해서 그 자체가 방재기관의 하나로 지정되고 있어서인지 대형 사고나 재난에 대해서 매우 주도면밀한 대처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HK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기준에 관한 핸드북」(NHK 번조기준)의 내용 중 ① 국민생활을 평온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상호부조의 정신을 높이도록 한다 ② 공안 혹은 공익을 어지럽히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인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기본정신아래 정리된 제 6 항 「사회생활」 편의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 재해, 대사고, 소동, 급격한 경제변동 등 인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방송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전달하고 필요없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냉정 침착한 배려를 하기를 바란다.

- 재해방송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본법을 시작으로 하는 관계 제법규 및 NHK의 재해대책규정 등 제내규(여러 가지의 내면규칙) 요령에 관심을 가지고 사태에 들어맞게 적절한 대응을 틀리지 않도록 정상시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 NHK는 재해대책기본법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는 「지정공공기관」이며, 방송법과 서로 어우러져서 재해시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재해에 의한 발재상황 인명의 안부 등 꼼꼼한 개별정보를 TV, 라디오의 각 전파를 유효하게 활용해서 속보하도록 배려한다.

- NHK의 재해대책규정은 재해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의 비상대비(대비)체제를 가 질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은 비상체제의 어디에 위치되어 있으며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누구에게 연락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공안, 공익을 어지럽히는 모든 방송과 폭력행위 등을 모두 하나의 범주 속에서 동일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재해에 대한 NHK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지진, 폭풍, 호우, 홍수 등 자연 재해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화재 등 제반 질서

파괴 현상이 모두 NHK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해는 불만한 구경거리와 이에 대한 알권리에 입각해 단순히 중계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영국의 BBC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프로듀서 가이드라인」(BBC Producer's Guideline) 또한 방송내용의 정확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과 프라이버시와 정보수집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고 있는 제5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읽어 볼 수 있다.

- 사고, 재난 보도(제2장 정확성 중에서) 사고, 재난, 혼란 보도시 BBC 기자들은 시청자들이 불필한 고민이나 근심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은 철저하고 진지해야 하며 또한 날카로워야 한다.

우선 재빠르고 정확하게 기본적인 사실자료-예컨대 시간, 장소, 도로, 비행기 편수 등-를 제공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 사실들은 시청자에게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비보도 프로그램 도중의 뉴스속보는 보도본부에서 준비해야 한다. 일일 시사프로그램에서 뉴스속보를 내보내게 될 경우에도 보도본부와 협력해야 한다.

생방송 사고보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해설자는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끔직한 사건의 묘사는 잘 조절해서 그 참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메라워크는 사려 깊어야 하며 클로즈업 촬영은 정말 필요할 때에만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청자에게 말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비참한 장면을 오래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해외사건보도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방송사가 화면을 공급할 때 만일 카메라워크가 우리가 했을 때보다 신중하지 않다면 항상 스튜디오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보도의 초기에는 정보의 출처가 특히 중요하다. 최초의 사상자 추측은 종종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만일 다른 출처의 추측이 제공된다면 우리는 양측을 다 보도하든가 가장 권위있는 출처를 따르든가 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초보도가 틀렸다고 인정되면 더 이상 실수를 은폐하지 말고 재빨리 정정해야 한다.

속임수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어떤 취재원이 익명이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취재원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나 재난의 최초보도는 특별히 주의깊게 확인되어야 한다.

- 고통과 고난(이하 제5장 프라이버시와 정보수집 중에서)

주요한 재난과 모든 종류의 비극적 사건을 보도해온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을 참작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미 그들의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더 해주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보도는 현장에 있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화면과 음성을 선택할 편집책임자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선택과정은 기호와 민감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 있는 뉴스팀은 종종 감정적이 되어 매번 민감한 판단을 못할 수 있으며, 기자와 카메라팀은 최종선택을 편집책임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 상자 또는 비탄에 빠진 사람과의 인터뷰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친구나 친척, 대리인을 통한 접근이 좋을 때도 있다. 비탄에 빠진 사람이 경찰이나 관계당국의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몰래 들여다 보거나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자료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극심한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의 촬영 또는 녹화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려깊지 못한 질문은 고통을 유발하고 해를 입힐 영 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장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존중하여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다.

시청자는 간혹 희생자가 기꺼이 보도에 협력했을 때조차 고통의 장면에 당황하거나 분개할 수 있다. 일반인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상황을 소개할 때 약간의 설명을 해줌으로써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재해현장 주변의 기본적 인 사실자료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든가, 정말 필요할 때 외에는 클로스업 촬영을 삼가거나 필요 이상으로 비참한 장면을 오래 비추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눈에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같은 문건에서 사망자명단의 공개와 관련하여 BBC 가 가족들이 알기 전에 방송으로 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대목도 우리나라 일본의 문화에서와는 조금 다른 배려이긴 하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매우 신중한 배려의 일단을 잘 읽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한국의 언론사들이나 언론유관 기관들의 윤리규범 내지 강령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의 윤리강령에서는 재난보도 프레임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어떤 내용도 파악할 수 없다. 방송사의 윤리강령에서는 이런 내용을 약간 담고 있기는 한데 그나마 있는 것도 위의 외국 사례에 비추어 매우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KBS, MBC 의 방송강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KBS 의 경우 방송강령 제 25 항에서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라고 적고있으며 제 27 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라고 적고 있다.

MBC 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생활보호에 대한 강령을 적고 있는 장 가운데 사고 현장 취재를 규정하는 자리에서 「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적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재난보도는 재난보도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사례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시되었다기보다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 않을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의 사고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재난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언론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새로운 강령내지 준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재난현장에서 상당한 기능을 해줄 수 있고 해주어야 하는 언론이 매체의 잠재 역량을 위축시키는

쪽으로만 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재난보도 프레임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재난보도에서 인권침해는 기우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연세대 신방과, 연세대 대학원(박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저술 : 「한국신문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개념의 오용에 관한 연구」,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일본재해보도의 다이내믹스」 외
- 현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